#### 12 (제269회-복지건설위제9차부록)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72

제출연월일: 2024. 12. 2.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운용 · 관리(안 제3조)
- 나. 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안 제3조의2)
- 다.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 관리(안 제3조의3)
- 라.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1657호, 2024, 9, 26.)
- 라. 입법예고: 2024. 9. 23. ~ 10. 14.(21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해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3조의3(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 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관리 해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4 (제269회-복지건설위제9차부록)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 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 · 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경비
    -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 마.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 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 · 구입
    -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의 보수·보강
-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 운영
-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
  -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에 특수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또는 응급복구
-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 연구
-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③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 에 위치한 시설일 것

- 16 (제269회-복지건설위제9차부록)
  -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울 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 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 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 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 치 ·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한 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 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 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 용 ·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아

제3조(기금의 운용 · 관리) 울산광 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 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 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 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 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 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 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 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 도로 운용 • 관리해야 한다.

제3조의2(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신 설>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u>가.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u> 물 제작

    -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

       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경비
    -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 · 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구청 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예치·관 리해야 한다.
- 제3조의3(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관리해 야 한다.
  -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해야 한다.
- <u>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u> 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u>가.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u> 물 제작
    - 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

       치 및 관리
    -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

       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경비
    -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제7 조에 따른 시설물(지방자 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 마.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 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 외)
-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 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 · 구입
-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 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 요한 부대경비
- 2. 영 제74조제3호에 따른 방재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 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의 보수・보강
- 3. 영 제74조제4호에 따른 재난 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 의 구축 • 운영
- 4. 영 제74조제5호에 따른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 조에 따른 시설물(지방자 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 마.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 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 외)
-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 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 · 구입
-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 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 요한 부대경비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의 보수 · 보강
-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

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
-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 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 5.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에 특수 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6. 영 제74조제7호에 따른 감염 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 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 구
- 7. 영 제74조제9호에 따른 재난 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 을 위한 조사·연구
- 8. 영 제74조제10호에 따른 재

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 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

-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 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 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에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또 는 응급복구
-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 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 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9. 그 밖에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 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 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 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 외한다.
- ③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 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 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 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 에 든 실비를 지원한다.

②・③ (생략)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대 한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 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 재나 주소・거소가 불분 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 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 기 어려운 경우일 것
-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 는 안전조치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 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 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u>한다.</u>

보고) ①
2 - 2 2
<u>제출해야</u>
②・③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 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 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 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 설

- 26 (제269회-복지건설위제9차부록)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 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내용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 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3. 작성자

○ 소 속: 안전총괄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이 봉 근

○ 연락처: (052)290-4052